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18-89

제출년월일 : 2018. 10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,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등(안 제1조 ~ 제3조)

-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어르신, 한부모가족,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로 정의

나.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등(안 제4조 ~ 제7조)

-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범위 명시

다.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 ~ 제10조)

-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
- 위원의 구성 및 임기, 해촉에 관한 사항
- 회의 개의 및 의결기준 정립,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8. 9. 6. ~ 2018. 9. 27. (제출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
3)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권고사항 반영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8. 10. 11.)

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부

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화재안전취약가구"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.

  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   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
  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마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

   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
2. "주택용 소방시설"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.

   가. 소화기

   나. 단독경보형 감지기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)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.

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.

제6조(지원계획 수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
2.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
4. 화재안전취약가구 기초조사
5.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7조(지원 신청)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연재해(지진, 폭염, 홍수, 산사태 등)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
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
1.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
3.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여부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생활보장과장·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·가정복지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장
2.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
3. 유관 기관의 장
4.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총무과 재난안전팀장이 된다.

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지원대상자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td>세대원수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전화번호
(휴대폰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대상자
구 분</td><td colspan="2">☐ 수급자
☐ 차상위계층
☐ 장애인
☐ 홀로사는 노인</td><td colspan="2">☐ 한부모가족
☐ 청소년 가장
☐ 기 타</td><td>담당공무원
확 인 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원분야 및
사유설명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원희망시기</td><td colspan="5">년 월 일</td></tr>
</table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

나. 관련 조문

1) 조례안 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)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) 조례안 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제4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매년 추진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정비 사업비는 2017년에는 34,754천원, 2018년에는 38,787천원으로 해당 조례제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전년도 집행금액 수준에서 조금 증액될 것임에

○ 총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전견숙
연 락 처	02-3153-8243